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심판관, 「도이세라스」사 사건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가결정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티모니 심판관은 지난 1997년 10월 1일, 「도이세라스」사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동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가결정'을 내렸다.

James P. Timony 심판관은 「도이세라스」사가 자사제품을 2/3 이하의 마진만을 취하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의 낮은 가격에 대한 평판을 부정하는 회원제 업체(warehouse club)와 관련하여 소비

자가 용이하게 가격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완구제조업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게 인기 완구의 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고가품의 조립상품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자사의 시장력을 이용하여 강제하고 있다는 FTC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이것을 지지하는 '가결정'을 내렸다.

James P. Timony 심판관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가결정서'에서 도이세라스사가 1989년 초에 ① 완구제조업자 각사와의 사이에서 회원제 업체에게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수직적인 합의에 이르고, ② 당해 완구제조업자 각사간에 상호정보 교환에 의하여 회원제 업체에게 판매제한행위를 준수케 하는 등 수평적인 합의를 지휘했다고 판시하였다.

지난 10월 1일의 가결정에 의하면, 「도이세라스」사는 자사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완구에 대하여 회원제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완구제조업자가 경합하고 있는 타사의 완구를 회원제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상품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업체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암묵의 합의를 하였다. 그 결과 1993년 초까지 Mattel사, Hasbro사 등 대규모완구제조업자 각사는 Price club, Sam's, B. J.'s 등 기타의 회원제 업체에 대하여 「도이세라스」사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Timony 심판관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완구가격이 상승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 심판관은 '가결정'에서 다음의 각 행위를 금지하는 배재명령을 하였다.

- ① 공급업자들간에 완구염매업자에게의 판매를 제한하는 모든 합의 또는 공통인식을 갖도록 기도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
 - ② 공급업자에 대하여 완구염매업자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
 - ③ 공급업자에 대하여, 타 공급업자에 의한 염매업자에 대한 판매, 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또는 장려하는 것
 - ④ 공급업자간에서 염매업자에게 판매의 제한에 관한 합의를 조장하는 것(특히 호소하거나 또는 의사 전달에 의해)
 - ⑤ 5년간에 걸쳐, 공급업자에 대하여 염매업자에게 판매를 이유로 하여 당해제품의 납품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며, 또한 공급업자가 염매업자와 사이에 거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공급업자로부터의 구입을 거부하는 것
- 본건 심리는 1997년 5월에

개시되어 최종의견진술은 '97년 9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Timony 심판관은 '97년 9월 25일에 '가결정'을 하고, 동 결과를 '97년 10월 1일에 발표했다.

■ '97. 10. 1. 연방거래위원회 발표

미 FTC, Guiness/ GrandMet 기업결합 인가

Grand Metropolitan사(이하 "GrandMet사"로 호칭)와 Guinness사간의 230억 파운드(38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12월 15일 미국 경쟁당국이 조건부 인가를 발표하면서 마지막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Diageo라는 이름으로 호칭될 이 새로운 기업은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인 Dewar's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Bombay Sapphire 프리미엄 진 부문을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매각이 없다면 기업결합 결과로 탄생할 이 기업은 미국 스텐더드 스카치 위스키 시장에서 60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GrandMet사의 회장인 George Bull과 Guinness사 회장인 Tony Greener는 "우리 두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이들 두 브랜드의 매각은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해 자산매각이 아니었으면 이들 두 업체는 미국에서 기업결합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분석가들은 오랜 기간 끝에 내려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번 결정은 놀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산매각은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이득을 볼 것임을 고려할 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분석가는 말하였다.

Guinness사와 GrandMet사의 주식은 12월 16일 밤에 상장폐지되며, Diageo사의 주식은 내일부터 거래가 개시된다.

이번 15일의 기업결합 인기는 10월의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결정에 뒤이은 것인데 당시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의 Dewar's 및 Ainslie's 스카치 위스키 부문 매각 및 유럽 수개국에서의 진, 보드카 및 럴주 유통으로부터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Dewar's는 전세계 스카치 위

스키 시장에서 8위지만 미국에서는 시장 주도 상품으로서 작년에 미국 내 판매량인 940만 상자 중 150만 상자를 차지하였다. 당해 브랜드 부문을 매각하면 Diageo사는 미국에서 판매고 기준 2위, 3위 및 5위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들 - J&B, 조니워커 레드 및 Scoresby - 만 남게 된다.

Dewar's 브랜드 부문을 매입할 만한 업체들 중 선두주자들은 영국의 Allied Domecq 사 및 캐나다의 씨그램사인데, 씨그램사는 Diageo사 다음의 제2위 주류업체가 될 것이다. 관심을 보일 만한 다른 기업들에는 프랑스의 Pernod Ricard 사 및 바하마의 Bacardi-Martini사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가들은 Guinness사의 연간 수익 중 6,000만 파운드를 차지하는 Dewar's 브랜드 부문의 매각은 6억~7억 파운드를 호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규모는 보다 작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6만 상자를 판매하고 있는 Bombay 진 부문의 매각은 5,000만 파운드부터 1억 2,500만 파운드까지 호가가 다양하다.

이러한 매각으로 인해 Diageo사의 세전이익, 이자 및 기타 항목이 5% 이상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매각이 수입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분석가들은 말하였다. “이들은 브랜드를 매각하는 것이지 무상양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분석가는 덧붙였다.

■'97. 12. 16, Financial Times

1998년 1~3월중에 미국의 동서로 2개 회사가 설립된다. 이 중 동쪽 회사에는 3개사가, 서쪽 회사에는 텍사코사와 셀사가 출자한다. 사업통합을 통해 판매력강화 및 비용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3사의 점유율의 합은 석유정제에서 미국 전체의 약 10%를 점하고 있다.

FTC는 인가의 조건으로서 셀사가 보유한 워싱턴 주의 정유소의 매각,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있는 텍사코사와 셀사의 주유소 수의 삭감 등을 요구하였고, 3개사는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하여 FTC의 요구에 응할 방침이다.

미국 석유산업의 하류부문(경제·제품판매)에서는 토스코사 등 전업기업 주도로 재편성이 진행되어 왔었다. 이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이저 2개사의 하류부문에서의 제휴가 실현됨으로써 대형 재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97. 12. 21, 일본경제신문

미 FTC, 텍사코·셀·아람코의 미국 내 석유정제·판매 통합 인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일, 미국의 텍사코사, 영국 로얄 셀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사에 의한 미국에서의 석유정제·판매 사업의 통합계획을 조건부로 인가하였다. 영국 British Petroleum사와 미국 모빌사가 작년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같은 형태의 사업통합을 실시한 데 뒤이어 국제석유자본(메이저)의 대형제휴가 결정된 것이다.

텍사코사, 셀사 및 아람코사 등 3개사의 사업통합에 따라

EU

체코 경쟁당국, 맥주업체간 기업결합 저지

체코 경쟁청은 영국 맥주업체인 Bass사가 체코의 2대 맥주업체들간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해할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저지하였다.

경쟁청은 시장의 주도업체인 Plzensky Prazdroj사와 일본 은행인 노무라 은행이 57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Radegast사간의 기업결합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경쟁의 계속이 방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Plzensky Prazdroj사 지분의 66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노무라 은행이 매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Investicnia Postovni Banka(이하 “IPB”라 함)는 이에 항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 은행 임원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형성될 40퍼센트의 시장점유율은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흔한 일이며 항

소시에는 체코 맥주 수출에 가져올 이득에 관한 한층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쟁청은 3개월 내에 종국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체코의 제3위 업체인 Prague Breweries사의 지분 5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Radegast사의 33.4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Bass사는 당해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체코 Bass사의 사장인 Graham Staley는 “당해 결정은 체코 당국이 자유경쟁을 신봉하고 있다는 중요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올해 초의 인터뷰에서 그는 맥주산업의 통합은 불가피하지만 “41퍼센트(기업결합되는 업체의 추정 시장점유율)와 14퍼센트(Bass사의 점유율)는 경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Staley는 Bass사가 Radegast사의 잔여 지분에 대하여 주당 6,500 체코 크라운으로 IPB에 대한 사적 매수 제안을 개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Radegast사를 Pargue Breweries사와 기업결합시키고자 하는 Bass사는 IPB와 지

분 매각에 관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노무라 은행이 7월에 동 은행을 매입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IPB의 지분은 이후 노무라 은행이 통제하는 네덜란드의 트러스트회사로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당 4,600 체크라운의 의무적 매수제안을 낸 IMP에 매각되었다.

6개 체코 맥주업체가 현재 생산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정체상태이다.

■ '97. 12. 16, Financial Times

EU 경쟁법 제안, 전기통신 회사와 케이블TV의 분리 포함

지난 12월 16일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하려는 시장지배적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초독점(supermonopoly)”의 형성 방지를 위해 이를 법적으로 별개인 사업체로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규칙은 전기통신회사의 케이블TV 사업활동이 시장지배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바로 Deutsche Telekom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회사는 최근 자사의 케이블 TV 사업활동의 구조적 분리에 합의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Koninklijke PTT Nederland사가 자사의 케이블TV 사업자인 Casema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축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케이블 TV 부문에서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동 부문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왔으나, 유럽위원회와 민간 사업자들은 과거로부터의 전기통신 독점사업자들이 기본 전화통신을 포함하여 완전한 전기통신시장 자유화가 개시되는 내년도 이전에 이미 광범한 케이블TV사업을 확립하여 놓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회계 분리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케이블TV 사업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리들은 회계 분리는 자금의 흐름만을 보다 투명하게 할 뿐인 반면 사업체의 법률적 분리는 자산 및 비용의 투명성을 높

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EU 경쟁 법 하에서 이의신청 내지 기업 결합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기통신회사에 대하여 자사의 케이블TV 사업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동 위원회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SGS-Thompson 사에 대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제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 정부가 1,800만 Ecu(2,000만 달러)의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한 이후 이를 종결하였다.

연구개발 담당 위원인 Edith Cresson과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조사에서 경쟁 담당 위원인 Karel Van Miert는 당해 지원은 위법하며 이를 봉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표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미루어진 상태였다.

■'97. 12. 17, Financial Times

통신산업 자유화 둘러싸고 전유럽 규제당국 논쟁

지난 4년 동안 유럽위원회와 유럽연합 15개국은 시장자유화 이후 통신산업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마련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비교적 강도가 약한 것으로서, 그 개념은 각국의 통신 규제당국이 경쟁 문제를 담당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위원회가 궁극적 중재관의 역할을 맡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다수 인사들은 시장자유화로의 이행을 감독할 단일 유럽 규제당국의 탄생을 열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의 분권화된 체계로는 문제의 해결이 너무 늦을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국별 규제당국(NRAs)의 독립성을 문제삼고 있다.

통신산업 담당 위원인 Martin Bangemann은 단일 전유럽 규제당국의 개념에 동조하고 있지만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회원국들에게 이를 요청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었을 것이다”라고 동 위원회의 한 관리는 말하고 있다.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단일 전유럽 규제당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각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통신산업에서는 의견이 갈리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규제당국을 지지하지만 그 당국이 무엇을 규제하려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France Telecom사의 Christophe Bortoli는 말하고 있다.

European Communications Network의 Richard Woollam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 규제당국이 없다면 유럽의 자유화된 시장은 해결에 수개월씩 걸리는 분쟁 속에서 침체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규제체계는 신속하여야 하고 우월한 권위를 가져야 하며 연방과 같은 조직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유럽은 이와 정반대되는 제도-자원이 부족한 각국 규제당국들이 서서히 분쟁을 해결하는 지방분권화된 체계-를 도입하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공공 통신네트워크 사업자단체

(Etno)는 “새로운 전유럽 규제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확립하기 이전에 NRAs 및 회원국들의 규제법령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 전유럽 규제당국의 도입을 찬성하는 한 논거는 이러한 당국이 더욱 독립적이며, 수년 전부터 대규모 시장자유화를 준비하여 온 강력하고 재력 있는 업체들인 과거의 독점사업체들을 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 NRAs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할 것이며 자신의 본국에서의 지위는 보존하면서 타국 업체 시장에의 진출쟁탈전을 벌이는 강력한 통신회사들간의 격돌의 와중에 휘말릴 수 있다.

“영국에는 1984년부터 통신청(Oftel)이 있어 왔지만 이는 아직도 재원 및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Woollam은 말하였다.

자원의 부족은 또한 규제당국의 대응을 지연시키는데, 이는 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려 하는 찰나의 경우에는 해악일 수 있다.

또 다른 우려는 NRAs의 독립성에 관련된 것인데, 이를 당국은 대개 통신업체 및 이를 운영하는 정부부처 소속이었던 직원 및 공무원으로 충원된다.

국영사업체 다수의 민영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당국에 대해 이들 사업체의 보유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내리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접속료에 관한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 현행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 NRA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와 NRAs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고 한 유럽위원회 관리는 말하였으며, 유럽의 최대 시장을 감독하는 이들 당국들은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및 독일의 새로운 당국들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접속료를 인하시켜 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위원회는 전유럽 단일 규제당국 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동 위원

회는 1999년 말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동 위원회가 그 때 전유럽 단일 규제당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Etno 및 다른 많은 통신업체들은 그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통신 부문에 특유한 규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야 한다”고 Etno의 Neil Gibbs는 말하였다. “특수한 규제를 요하는 번호 및 주파수대 부여와 같은 일정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97. 12. 19,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셀사와 BASF간 폴리에틸렌 합작투자사업 인가

유럽위원회는 폴리에틸렌 분야에서의 BASF와 셀사간의 합작투자사업 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새로운 합작투자사업은 유럽 내 생산능력의 약 11%를

차지하게 되어 Borealis사에 뒤이어 Polimeri Europa사 및 다우사와 유럽 2위 업체 자리 를 다투게 될 것이다. 새로운 회사의 규모 및 유럽경제지역 (EEA)에서의 다수의 강력한 경쟁업체의 존재를 고려한 후, 동 위원회는 당해 사업집중이 폴리에틸렌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상세한 조사가 있은 후 그리고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형성을 지원하는 법적 형태에 대한 일부 조정의 결과, 동 위원회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이 모기업들에 의해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 시장에서의 이들 회사들의 활동에 대한 조정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집중은 당해 부문에서의 광범한 사업재구축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모든 주요 업체들은 다수의 기업결합 및 합작투자사업에 관여하여 왔었다.

BASF 및 셀사는 화학산업에서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폴리올레핀 사업부문에서 이들은 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 합작투자사업

과는 별도로, 자회사인 Targor 사 및 Montell사를 통해 기타 주요 가열성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특히 강력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BASF 및 셀사는 각각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자본 50%를 보유할 것이며 동 사업에 대해 공동 통제권을 가질 것이다. 이들 모기업은 독일 Wesseling 공단에 위치한 기존의 50/50 생산 합작투자사업의 50% 지분을 출연할 것이다. 또한 BASF는 Ludwigshafen 지역의 기술 및 R&D 활동을 포함하여 전세계 폴리에틸렌 사업 전부를 당해 합작투자사업에 출연할 것이다. 셀사는 프랑스의 Berre L'Etang, Fos 및 Notre Dame de Gravenchon 지역과 영국 Carrington 지역의 공장을 포함하여 Montell사의 유럽 폴리에틸렌 사업부문 전체를 당해 합작투자사업으로 이전 할 것이다. 더욱이 Montell사와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현재 Montell사에 속해 있는 프랑스 Aubette / Berre L'Etang 지역에 소재한 나프타 분해사업을 운영할 50/50 생산 합작투자사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사

업은 EU 규정 17/62에 따라 신고를 마쳤다.

서유럽에서 당해 합작투자사 업은 폴리에틸렌 시장에서 약 10~11%의 점유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밀도 폴리에틸렌 부문에서는 이보다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많은 수의 제조업체들이 유럽에서 생산을 계속할 것이므로, 이 사업은 경쟁에의 영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우려도 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해 합작투자사업이 기술 라이센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동 위원회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설립이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 시장, 그리고 특히 BASF와 셀사가 유럽에서 최대업체인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BASF와 셀사간의 사업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제조과정 및 그 응용에 관하여 다양한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간의 복잡한 연계를 검토한 후,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래 협정에 가한 일부 수정의 결과, 동 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당해 합작투

자사업은 모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나프타 분해사업 및 폴리에틸렌 사업을 최적화하며, 이 사업이 이 지역에서 BASF 및 셀사 활동에 제공될 위험은 회피될 것이다.

■'97. 12. 23.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차의 차량 번호를 조사해서 독일소재의 「포르세」사에 통지하여 「포르세」사가 수출한 차량의 일본 공급경로를 조사케 하고, 병행수입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도록 「포르세」사에 요청했다.

(1) 동경도에 소재한 병행수입업자는 1996년 7월, 신모델의 병행수입차 15대를 희망소비자가격에서 약 20%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요지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미쓰와자동차는 동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점두조사를 실시하여, 한대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동년 8월 「포르세」사에 통지했다.

일본

공취위, 미쓰와자동차(주)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

미쓰와자동차(주)(이하 「미쓰와자동차」라 함)는 1995년 6월경 신모형차를 희망소매가격의 약 35%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병행수입업자의 광고를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게 되면 동일한 형태의 병행수입업자의 증가로 병행수입차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점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영업활동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희망소매

「포르세」사는 통지 받은 차량번호를 확인한 결과 당해 「포르세자동차」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총대리점에 판매된 차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동 수입총대리점에 대하여 1996년 8월, 상기 병행수입업자에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일본에 공급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또한 「포르세」사는 1996년 8월, 미쓰와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포르세자동차가 전기 수입총

대리점에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요지를 회답했다.

(2) 미쓰와자동차는 계속하여 상기 병행수입업자를 조사함과 동시에 1996년 9월경, 동경도, 애지현 및 오사카부에 소재하는 병행수입업자 9개사에 대한 점두조사를 실시하고 오사카부에 소재하는 대형 병행수입업자 2개사의 점포에서 병행수입차 8대의 차량번호를 확인, 이를 1996년 10월 「포르셰」사에 통보했다.

「포르셰」사는 통지받은 차량번호 8개 가운데 신모델차 4대에 관해서도 전기 수입총대리점에 판매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1996년 10월, 동 수입총대리점에 대하여 일본에 공급하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포르셰」사는 1996년 10월, 미쓰와자동차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8대 가운데 4대가 전기 수입총대리점에서 판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3) 미쓰와자동차는 동경도, 애지현 및 교토부에 소재하는 병행수입업자 6개사에 대하여 서도 점두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병행수입업자의 점포에서 병행수입차 15대의 차량번-

호를 확인하고 이것을 1997년 1월 「포르셰」사에 통지했다.

「포르셰」사는 통지 받은 차량번호 15개를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신모델 자동차 6대에 관해서는 전기 수입총대리점에 판매한 것으로 판명했기 때문에 1997년 1월 미쓰와자동차에 동 결과를 회답하였다. 또한 「포르셰」사는 1997년 2월, 미쓰와자동차에 대하여 전기 수입총대리점으로부터의 수주를 단절하고 이미 수주받고 있는 포르셰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본에 공급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출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미쓰와자동차는 1997년 3월, 독일에서 개최된 「포르셰」사 및 전기 수입총대리점과의 3자 회의에 참석하여 동 수입총대리점이 일본의 병행수입업자에게 포르셰자동차를 공급을 항의하는 동시에 「포르셰」사에 대하여 금후 동일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포르셰」사는 1997년 6월경 전기 수입총대리점과의 거래를 중지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상기의 미쓰와자동차(주)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일반지정

제15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권고조치 했다.

■ '97. 11. 10,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독점법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본법인 현장조사

—

공정취인위원회는 13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본법인(도쿄 시부야 구, 成毛眞 사장)이 일본 내 PC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경쟁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독점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NEC 및 후지쯔 등 일본 내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자사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워드」와 계산소프트웨어인 「엑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양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지시한 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되어 있는 PC에 대하여서는 경쟁관계인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

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둘러싸고는 작년 10월, 미 법무부가 운영체제(OS)인 「윈도우 95」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법하게 연계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를 제소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연방지방법원이 연계판매 중지의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본법인에서는 「이번의 현장조사는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연계판매의 일본에서의 실태조사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에는 협력할 것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98. 1. 14, 산케이신문

공취위연구회,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폐지 방향으로 검토

신문 및 서적, 음악CD 등 저작물 6개 품목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존폐를 검토하여 온 공정취인위원회의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회장 鶴田俊正 専修大 교수)는 13일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보고서는 「제도유지의 이유는 빙약하여, 기본적으로 폐지의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문화적인, 그리고 공공의 관점에서 즉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관계업계가 제도의 폐해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는 등, 신중을 구하는 의견을 병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취위는 보고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을 행하여 3월말까지 동 위원회의 결론을 정리한다. 보고서는 「창설 당시와는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있어, 이를 존속시킴에는 시장원리가 기능하는 데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족한 근거가 필요」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문화적인, 그리고 공공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관계업계에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폐해 시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등 품목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밖에 신문에 대하여서는,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호별배

달의 유지」 및 「격렬한 가격인하 경쟁의 방지」 등에 대하여서는 신문사의 노력 및 현행법의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신문이 매일 독자의 집으로 호별배달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여, 「재검토시에는 판매점·신문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기재되었다.

또한, 서적·잡지 및 음악용 CD에 대하여서도 「2대 중개업체에 의하지 않으면 유통시키기 어려운 구조」(서적·잡지), 「폭넓은 가격대에 정가가 집중」(CD)되는 등의 문제점을 열거함과 함께, 재판매가격유지제도 폐지에 따라 「가격에의 영향이 발생한다」(서적·잡지), 「중소 레코드점이 도태된다」(CD)는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공취위는 1992년부터 제도 수정 검토를 개시하여, 같은 해 7월 7일에는 연구회 밑에 설치된 소위원회가 「재판매가격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중간보고를 정리, 작년 2월부터 연구회가 종합적인 정리를 진행하여 왔다.

■'98. 1. 14, 산케이신문